

(제11-1호)<개정 2019.4.1.>

### 과징금·과태료 부과 사항

1. 조치 대상 법인명	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
2. 과징금 등의 종류	과태료
3. 과징금 등의 근거	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52조제4항제5호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, 제38조, [별표4]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26조의4, [별표6]
4. 과징금 등의 원인	신용정보 등록의무 위반
5. 과징금 등의 내용	6,000,000원
6. 기타	- 결정통보일 : 2020.04.27. - 과태료의 경우 기간내 자진납부시 감경금액 : 4,800,000원

기재상의 주의

주1)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공시